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2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557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원 고	A
피 고	[redacted]도
변 론 종 결	2014. 12. 18.
판 결 선 고	2015. 2.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B 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 4,799,440원(2014. 3. 18. 기준, 가산세 포함) 납부의무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2

가. 원고의 지위

C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건설기계를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한 자이고, 원고는 C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이다.

나. 건설기계 허위 등록 및 등록 말소

C은 주식회사[redacted]에서 임의로 생성한 차대번호(D)를 이용하여 건설기계를 실제로 제작한 것처럼 건설기계 제작증 등 제작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모집한 명의대여자인 원고 명의로 존재하지 않는 건설기계를 취득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접수하여 2011. 1. 6.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원고를 B 천공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소유자로 등록하게 하였다.

C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redacted]지방법원에서 2012. 9. 5.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redacted]시장은 2013. 1. 24.경 이 사건 기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건설기계임을 이유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기계의 등록을 직권말소하였다.

다.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취득세 신고

한편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취득세 신고는 2011. 1. 6. 이루어졌는데, 전체 세액 7,480,000원 중 4,180,000원은 당일 납부되었다.

라. [redacted]시장의 원고에 대한 취득세 체납 통지

[redacted]시장은 2014. 3. 18.경 이 사건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4,799,440원(2014. 3. 18. 기준)이 체납되어 있으므로, 2014. 3. 31.까지 이를 자진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계의 등록은 C의 범죄행위로 존재하지 않는 기계를 등록한 것이고, 피고도 이를 인지하고 등록을 직권말소하였다. 즉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취득은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관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취득세 신고행위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미납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납부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2

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기계장비를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기계장비는 구 지방세법 제6조 제8호에서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문언 및 구 지방세법에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존재하는 기계장비를 의미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계의 취득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고,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이상 원고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기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계장비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은 성립할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2

2)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취득세 신고행위의 경우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기계의 취득 사실이 없다는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이 사건 기계의 취득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인다.

4)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redacted]시장은 2014. 3. 18.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취득세가 체납되었음을 통지하면서 납부를 독촉하였고, 취득세는 도세로서 귀속주체가 피고인데, 피고가 취득세 납부의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강회

판사 박성남

판사 신유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22

관계 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등록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의 말소)

① `시·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끝.